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

발의연월일: 2016. 1. 13.

발 의 자: 박문수 의원

찬 성 자: 이백균의원, 강선경의원, 유인애의원

1. 제안이유

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,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관계공무원과 증인,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,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, 영상물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4항 신설)

나. 그 밖에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정비(안 제2조 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0조, 국회법 제57조

나. 예산조치 : 불필요

다. 사전협의(승인) : 불필요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(이하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총선거후”를 “총선거 후”로, “전일”을 “전날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소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의 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범위에 한하며, 소위원회”로, “소관위원회”를 “소관 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, 영상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중 “을 준용한다”를 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(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	제2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이하 ----------.
제7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 ② (생 략)	제7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. 총선거 후 ----------전날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상임위원장)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 ② ~ ④ (생 략)	제8조(상임위원장) ①----------1명--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특별위원회) ① 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	제9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. -----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	제12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---------- 1명-------

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	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부위원장)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	제14조(부위원장) ①---------- 1명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소위원회) ①·② (생 략)	제15조(소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.	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범위에 한하며, 소위원회--- 소관 위원회----------.
<신 설>	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, 영상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다.
제1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6조(준용규정) ----------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【 관 계 법 령 】

❑ 지방자치법

제40조(서류제출요구)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❑ 국회법

제5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상임위원회(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)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·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.
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⑥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·영상물의 제출을 정부·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.
⑦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 다만,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.

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(현행)

제15조(소위원회)

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.

③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.